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8. 27.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12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신업인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위험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목적과 관련 용어를 규정.
- 안 제3조와 제4조는 동 조례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 규정.
- 안 제6조는 협력체계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.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화 하여 규정.
- 안 제9조는 영등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방법 규정.
- 안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통한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는 2021. 5. 18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일부개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으로, 영등포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를 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, 관련 교육,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.
-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통계에 따르면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 이후,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이 점차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, 이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, 홍보 및 교육 등으로 안전 문화 의식 내재화와 경각심 제고가 어우러진 성과라 볼 수 있음.
- 따라서,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,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387 번 호 발의연월일: 2024. 8. .

발 의 자: 이순우、유승용、이성수

전승관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마.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근로기준법」,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8. 19. ~ 8. 23.)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산업재해"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 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 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 - 3. "사업주"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 - 4. "안전보건지킴이"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협 요소의 발굴·조사 ·개선·지도·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및 그 소속 행정기관
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·출연한 기 관

- 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. 다만,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협력체계 구성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 부, 서울 지방고용노동(지)청, 산업안전보건공단, 사업 주체, 산업재해 관 런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(이하 "예방 대책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
 - 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
 - 4.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 - 5.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
 - 6.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

- 7.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
- 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
 - 2.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· 연구
 - 3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
 - 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 - 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
 - 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 - 7.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- 8.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(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)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(이하 "안전보건지킴이"라 한다)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 - 1.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 - 2. 기업체,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 - 3.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

-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- 2.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
- 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
- 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-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)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등포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
- 2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